

제 1159 호  
1985. 8. 1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 모 관  
 편집인 : 공 보 관 이 광 우  
 전 화 : 731-6111-3  
 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 전 화 : 735-3337

# 시 보

## 차 례

◎ 고 시	
제 552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.....	3
제 553 호 : 도시계획사업 (유용업무설비-주유소) 시행허가 .....	3
◎ 공 고	
제 476 호 : KS 표시정지처분공고 .....	4
제 478 호 : 도시계획사업 (유용업무설비여객자동차정류장) 시행허가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.....	4
제 479 호 : 도시계획사업 (유용업무설비) 시행허가에 따른 공람공고 .....	5
제 480 호 : KS 표시 정지처분공고 .....	6

< 이 면 계 속 >

공											
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1479

제 481 호 : 관인교부 및 폐기공고 .....	6
제 482 호 : 제 2 종전기공사업체면허취소처분 .....	7

◎ 사 령

◎ 정 정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52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8. 19.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
- 2. 사업주체 : 강남구방배동 518 번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원주택조합 대표 박상진
- 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
  - 가. 위치 : 성동구마장동 784 의 24 필지
  - 나. 대지면적 : 24, 111.09 ㎡
  - 다. 규모 : 아파트 15 층 6 동 480 세대 상가 3 층 1 동 및 부대복리시설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53 호

도시계획사업 (유통업무설비 - 주유소) 시행허가

- 1. 건설부고시 제 1 호 (84.1.4) 로

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(유통단지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) 승인된 사항중 도시계획시설 (유통업무설비 - 주유소) 인 개포택지개발사업지구 B3 - 3 호 (강남구 양재동 459 번지 1 의 15 필지)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코자 서울특별시공고 제 424 호 (85.7.24) 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와 동령 제 6 조 1 항에 의거 동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,

- 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8. 19.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개포택지개발사업지구 B3 - 3 호, 강남구 양재동 459 의 1 의 15 필지
- 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유통업무설비 - 주유소) 시행
- 다. 사업의 규모

- (1) 대지면적 - 7,857.60 ㎡
- (2) 건축면적 - 1,218.50 ㎡
- (3) 건축연면적 - 3,618.50 ㎡
- (4) 세부시설

(4) 세부시설			(단위 : m <sup>2</sup> )
시 설 명	규 모		비 고
	건축면적	건축연면적	
주 유 소	463	652	
부대시설 (식당, 기숙사)	575.50	2,786.5	
" (부속실)	130	130	
" (화장실)	50	50	

라. 사업시행자 : 강남구반포동산 50-9  
대신석유(주) 대표이사 이인석

마. 사업예정기간

(1) 착수예정일 : 85.8.19

(2) 준공예정일 : 86.7.31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 별 첨 (생략)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인의 주소, 성명 : 별 첨 (생략)

1. 업체명 : 한일소독기공(주)
2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4-53
3. 대표자 : 김 봉 태
4. 규격번호 : KSB 5301
5. 규격명 : 접선류 익차형 13mm 수도미터
6. 종류등급 : MD 13
7. 처분사유 : KS 규격미달
8. 처분기간 : 공고일로부터 3개월 (별도 해제시까지)

**공 고**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76 호

**KS표시 정지처분공고**

공업표준화법 제 21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5. 8. 16.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78 호

도시계획사업 (유통업무설비  
여객자동차정류장) 시행허가  
변경에 따른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639 호 (83. 11.25) 및 동고시 90 호 (84. 2.20) 로 도시계획사업 (유통업무설비, 여객자동차정류장) 시행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

<p>도시계획사업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주민의견 청취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본사업 변경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</p>	<p>한내 서면으로 제출하기 나란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5. 8. 16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 <p>가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유통업무설비, 여객자동차정류장) 변경</p>
---	--

나. (1) 사업개요

구분 종류	당 초	변 경	비 고
사업시행지	월계동 132-1의 5 필지	월계동 128번지일대	
대지면적	4,328㎡	9,138㎡	증 4,810㎡
건축면적	728㎡	1,053㎡	증 315㎡
건축연면적	2,101㎡	2,564㎡	증 463㎡
사업시행자	상남구반포동산 2-1 현대시멘트(주) 대표이사 김희방	변 경 없 음	
사업기간	1983.12.10 ~ 84.12.30	1983.12.10 ~ 86.12.30	공사기간연장

(2) 사업개요

사업시행지 : 도봉구 하계동  
203번지일대

변경사항 : 사업기간연장

당초 : 84.2.25 ~ 85. 7.31

변경 : 84.2.25 ~ 86.12.30

다. 기타 설계도서 : 생략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79 호

도시계획사업 (유통업무설비)  
시행허가에 따른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73호 및 서고시 제 149호 (78.4.11), 서고 495호 (83.9.24)로 도시계획시설 (유통업무설비) 결정되어 고시된 지역

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에게 서류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한다.

2. 관제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공람하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공람기한내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란다.

1985. 8.16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 
(유통업무설비)  
명칭 : 노무자 대기실 및 사무실 전립

나. 사업기간 (예정) :  
85.10.1 ~ 86.10.30

다. 사업개요

시행위치 : 도봉구월계동 87번지

대지면적 : 4,271 ㎡

건축면적 : 149.68 ㎡

연면적 : 285.76 ㎡

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

서울시중구서소문동 58-12

대한통운(주) 대표이사 안철환

라. 기타 설계도서 : 생략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80 호

KS 표시정지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5. 8.17.

서울특별시장

1. 업체명 : 태양금속공업(주)
2. 대표자 : 한은영
3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동구  
풍납동 340
4. 규격번호 : KSB 1023
5. 규격명 : +자홈 작은나사
6. 종류등급 : 바인딩 작은나사
7. 처분사유 : KS 규격미달
8. 처분기간 : 공고일로부터 3개월  
(별도 해제시까지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81 호

관인교부및폐기공고

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장의 직인 및 제인을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고 서울특별시립남부녀보호지도소장의 직인 및 제인을 동규칙 제 4조의 규

<p>정에 의하여 폐기함을 동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5. 8. 19. 서울특별시장</p> <p>1. 사용및 폐기일자 : 1985. 8. 20</p>		<p>2. 사용직인 가.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장의인 나.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의계인</p> <p>3. 폐기직인 가. 서울특별시립남부녀보호지도소장의인 나. 서울특별시립남부녀보호지도소의계인</p>			
인  영					
공인명	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장의 직인 및 계인	서울특별시립남부녀보호지도소장의 직인 및 계인 ( 폐 기 )			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482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종전기공사업체면허취소처분</p> <p>전기공사업법 제 3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</p>		<p>소지업체에 대하여 그 면허를 취소 처분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5. 8. 19. 서울특별시장</p>			
면허번호	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처분	사유
2종 194	현대종합 공사	종로구관수동 102-2	박광환	면허 취소	전기공사업법 제 31조 1항 ( 면허기준미달 )

사 령

◎ 1985년 8월 16일자

령제 301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정운철	구의수원지	동부건설사업소	지방기제원(9등급)
이규석	"	서부위생처리장	지방기제원(8등급)
김종순	"	북부건설사업소	"
이성원	"	시립운동장	"
이찬희	"	동부병원	"
강용문	"	선유수원지	"
이기섭	"	새종문화회관	지방기제장(7등급)
최종성	서부위생처리장	서대문병원	지방기제원(9등급)
이범주	북부건설사업소	시립대학	지방기제장(7등급)
윤청길	구의수원지	시립운동장	지방전기원(9등급)
김문경	"	중 구	"
이덕호	"	성동구	지방전기수(10등급)
김근영	"	종합종말처리사업소	지방전기원(8등급)

◎ 1985년 9월 1일자

령제 302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최광열	서울특별시진입을 명함 은평구 근무를 명함	전남진도군고군면사무소	지방행정서기

◎ 1985년 8월 19일자

령제 303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김우결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	동작구	지방별정직 7 급상당



◎ 1985년 8월 19일자		령재 304호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김순복	지방별정직 6급상당 (전산 처리사)에 입함 5호봉을 급함 자동차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	자동차관리사업소	지방별정직 7급상당
서울특별시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정 정</div>			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32호 (85.7.1)호와 관련임			
○ 정정내용 (토지조서) : 토지소유자			
연번	소재지지번	변경전소유자	정정후소유자
6	봉천동 498-17	김용범	김용봉